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705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협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이승현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12.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20347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 체결된 신탁계약을 50,722,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722,1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은 날짜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7.과 같은 달 28. C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8. 6. 15. C으로부터 채무금액 120,000,000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C을 고소하였고, 2019. 5. 9. C으로부터 56,000,000원을 2019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6회에 걸쳐 월 1,000,000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C은 2018. 8. 3.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9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D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3. 접수 제39125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8. 8. 3. 위 대출금으로 E조합에게 채무 원리금 합계 84,277,89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1. 경료된 채권최고액 100,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소멸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C의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자금유통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D조합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보전처분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금 취급기준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D조합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파악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인 D조합이 선의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탁법 제8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387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갑 제7호증의 기재,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D조합은 우선수익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조합은 C의 여신현황, 신용카드 이용현황, 담보제공현황, 신용정보와 납세증명을 확인하는 등 자체 여신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C에게 98,000,000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위는 통상적인 대출 관행에 부합한다.

② C은 위 대출금 98,000,000원 중 대부분인 84,277,890원으로 E조합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③ 금융기관인 D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C에게 대출을 해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④ 설령 D조합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알지 못한 데에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D조합의 선의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D조합이 선의이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영, 판사 이재희, 판사 정성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9.3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532400000000분의 2261741502

